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소극 행정 요인을 개선하고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당초)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구미시 발주, 준공일부터 1년 이내)
 - (변경) 구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부실공사 신고기한 개선(안 제9조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설공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소극 행정 요인을 개선하고 부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기존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부설시공 신고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및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항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시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
-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모든 구미시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하여 공공건설의 책임성 강화와 신고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아시아 육상경기장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다수의 하자 발생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향후에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감사담당관 차원의 사전 예방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